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불법행위 책임 인정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 과제명 : 이 사건 개발과제
- 총 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0.까지(12개월)
- 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피고)과 을(원고)은 다음과 같이 개발을 체결한다.

제2조(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사업비 지급)

- ① 갑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수요처 민간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을이 운영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과물의 소유권 및 실시권 허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기술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을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체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

정 - 지자체에 대한 약 8천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요처(피고)가 주관기관(원고)으로부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예상 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요처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요처와 주관기관 사이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법(私法)상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요처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요처는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단가, 수량, 구매시기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구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